

2년 전 은퇴하면서 IRP계좌에서 매년 1,200만 원씩(연금수령 한도 이내 금액) 인출하고 있다.

해당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고 퇴직소득은 없다. 박연금씨(65세, 부양가족 없음)는 올해 1월부터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예정이다. 노령연금 수령액 중 75만 원은 2002년 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.

연금소득공제액 산정 테이블은 다음과 같다.

연금소득공제액

총연금액	공제액(한도900만원)
350만원 이하	전액
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	350만원+350만원 초과금액 X 40%
700만원 초과 1,400만원 이하	490만원+700만원 초과금액 X 40%
1,400만원 초과	630만원+1,400만원 초과금액 X 40%

종합소득세율 : 과세표준 1,400만원 이하인 경우 6.6% (지방소득세 포함)